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년을 도과한 해직자의 퇴직급여 감액 해소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추가〉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7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	---

2. 검토의견	7
---------------	---

[참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현황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3.
3. 회부연월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 1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정법률 시행일(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활동과 관련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그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2021년 4월 13일 이후----- ----- ----- ----- -----.-----

현행	개정안
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 설>	-----지급하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2021년 4월부터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하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③ (생략)	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 제도 적용한다. 제3조(퇴직연금일시금등의 금액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금액된 퇴직

현행	개정안
	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이 법은 2018년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법률 제17889호, 2021.1.12. 제정, 2021.4.13. 시행).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활동을 사유로 파면·해임·당연퇴직 등 해직된 공무원은 소속기관별로 구성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직 공무원¹⁾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²⁾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복

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대상자는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되고³⁾, 해직기간 중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0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의 기간)은 해직 당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금액 사유(금고 이상의 형, 파면)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유라면 재퇴직 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생략)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생략)

5)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반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제정법률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하 “정년도과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2021년 4월 13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경우 그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정년도과자에 대해서도 복직자와 동일하게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 활동 관련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⑤ (생략)

6)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③ (생략)

전의 법률) 제64조제1항제2호(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감액 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1)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사유로 감액된 퇴직급여(연금)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 해당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연금) 전액을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시점부터 지급하되, 2021년 4월부터 개정법률에 따라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연금) 전액을 최초로 지급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산정한 소급 기간 동안의 감액분은 퇴직급여(연금) 전액을 최초로 지급하는 때(즉,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시점)에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2)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사유로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을 기지급받은 경우에는 : 해당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금액과 기지급받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차액인 감액분을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공무원연금법」에서는 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 ②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직공무원 중 복직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유로 인정되면 파면된 경우 외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모두 감액 사유가 해소되어 구제가 가능하지만, 정년도과자의 경우 파면된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파면과 금고 이상의 형을 함께 받은 경우 포함)에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동일한 사유로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021년 4월 13일 기준으로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도과자가 복직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 7)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정년도과자의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 감액 사유로 명시하여 복직자와 정년도과자의 형평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 특례 적용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48)⁸⁾은 판결이유에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해직공무원 중 제정법률 시행일 당시 정년을 도과하여 복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해소되지 않게 되는 바, 정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

다만, 개정안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감액 사유를 해소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하여 안 제13조제1항 단서와 안 제13조제2항에서 중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이 법 시행일”, “이 법 개정”, “개정법 시행일” 등 흡수개정방식⁹⁾

8) 제2호(파면)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이후 동일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제1호(금고 이상의 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직공무원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제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으로 2024.11.22. 선고 예정임.

9) 법률 개정방식으로는 증보방식과 흡수개정방식이 있으며, 증보방식은 기존 법률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된 조항 전체를 추가하는 방식이고, 흡수개정방식은 종전 법률 내용 중 달라진 부분만을 공포하고 이를 다시 편집하여 기존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

특성상 해석에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법률에 따라 정년도과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연금) 전액 및 감액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감액분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률의 부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¹⁰⁾ 법적 정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개정 대상 조항은 아니지만 현행법 제5조 제2항¹¹⁾ 및 제14조제1항¹²⁾ 중 “이 법 시행일”은 흡수개정방식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함께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행법 제5조제2항 및 제

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임(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99).

10) 그 밖에 해당 사항을 본칙에서 규정하되, “이 법 시행일” 등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 00000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 지급 기한의 기산점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생략)

14조제1항 중 “이 법 시행일”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관련성이 없고 당초 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2021년 4월 13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제정법률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4조제1항제2호(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의 사유에 따라서만”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제정법률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4조제1항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사유로” 감액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규율하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는 정년도과자도 복직자와 동일하게

공무원 노조 관련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개정안의 법문에 있어서 내용상 중복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현황

* (출처) 전공노 작성자료

○ 해직사유별 총 136명

- 징계면직 127(파면 76, 해임 51), 당연퇴직 7, 직권면직 1, 계약해지 1

○ 기관별

- 중앙 4, 지방 123, 교육청·대학 5, 법원 2, 국회 1, 선관위 1

계	중앙	대학	교육청	법원	국회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6	4	2	3	2	1	1	123	25	3	4	9	5	14	19	15	13	2	1	4	3	5	1

○ 직급별

- 일반직 116명, 기능직 16명, 별정직 1명, 계약직 3명

합계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능7	기능8	기능9	별정7	계약직
136명	37	60	15	1	3	2	9	5	1	3

○ 기간별

- '01~'03년 8명, '04~'05년 104명, '06~'09년 19명, '10년 이후 5명

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13	'15
136명	1	4	3	71	33	10	2	1	6	2	1	1	1

○ 정년 도과 등 현황

- 정년 도과자 45명 및 사망자 6명

구분	사망	정년	'21	'22	'25	'27	'29	'34	합계
인원	6	45	13	13	24	19	12	4	136
누계			64	77	101	120	132	136	